

신용회복위원회 주요업무

- 채무조정**
- ◆ 신속채무조정, 사전채무조정, 개인워크아웃
 - ◆ 새출발기금 중개형
 - ◆ 개인회생·파산 신청 지원

- 소액금융**
- ◆ (소액대출) 위원회 채무조정, 법원 개인회생,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- 최대 1,500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 등 긴급자금
 - ◆ (소액신용·체크카드 발급) 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30~100만원 한도의 신용·체크카드 발급지원

-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**
- ◆ (금융) 정책서민금융상담 등
 - ◆ (고용) 고용상담,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등
 - ◆ (복지) 복지상담, 정신건강상담 등
 - ◆ (기타) 소상공인 정책사업, 법률구조 등

- 컨설팅**
- ◆ (신용복지컨설팅) 채무문제 해결방안, 신용점수 관리방법 등 맞춤형 컨설팅
 - ◆ (소상공인컨설팅) 소상공인 상황별 1:1맞춤형 컨설팅 제공 - 경영안정, 사업정리 컨설팅

- 신용교육**
- ◆ 청소년·대학생·군장병·일반인 대상 올바른 신용관리방법, 채무조정 제도 소개 등

-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**
- ◆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배정
 - ◆ 피해내역·증빙자료 정리
 - ◆ 신고서 작성·피해신고·사후관리



상담방법

대면(방문) 상담

전국 50개 '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' 방문

- ◆ 상담시간 : 평일 09:00 ~ 17:00
- ◆ 필요서류 : 신분증
- ※ 콜센터(1600-5500) 또는 앱(App)으로 예약 후 방문

비대면 상담

1 모바일 앱(APP) 상담

'신용회복위원회' 앱(APP) 다운로드/설치

- ◆ 상담방법 : 앱에서 본인인증 후 상담 신청
- ※ 앱 설치 시 반드시 공식 앱 여부 확인[사칭앱 주의]

2 웹(WEB) 사이트 상담

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(cyber.ccrs.or.kr) 접속

- ◆ 상담방법 :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 상담 신청

3 콜센터 전화 상담

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로 연락

- ◆ 상담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
4 신용복지컨설팅

신용전문가와 1:1 유선상담

- ◆ 상담신청 : 신용회복위원회 앱 '신용복지컨설팅' 메뉴에서 신청

※ 연이율 60%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.

('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)

상담전화

☎ 1600-5500

▶ YouTube

📍 신용회복위원회 CCRS

2026년 3월

값기 힘든 빛
신용회복위원회와
상담하세요.

다시 피어날



당신의
소중한 일상을
 응원합니다



신용회복위원회

연체우려(0일) 또는 연체 1~30일

(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)

신속채무조정

10000

- ◆ 단기연체정보 해제, 연체정보 등 미등록
- ◆ **상환방식**: 원리금분할상환
- ◆ **적용이율**: 약정이자율의 30~50% 인하 (하한 연3.25%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10년
- ◆ **상환유예**: 최장 3년(연3.25%)

특례

- ◆ **대상**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자
- ◆ **상환방식**: 원금분할상환
- ◆ **채무감면**: 이자감면 및 0~15% 범위 내 원금감면

연체 31~89일

(연체정보 등록 전 지원이 필요하신 분)

사전채무조정

10000

- ◆ 단기연체정보 해제, 연체정보 등 미등록
- ◆ **상환방식**: 원리금분할상환
- ◆ **적용이율**: 약정이율의 30~70% 인하 (상한 연8%, 하한 연3.25%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10년
- ◆ **상환유예**: 최장 3년(연2%)

특례

- ◆ **대상**: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자
- ◆ **상환방식**: 원금분할상환
- ◆ **채무감면**: 이자감면 및 0~30% 범위 내 원금감면

연체 90일 이상

(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이신 분)

개인워크아웃

10000

- ◆ 연체정보 등 해제, 공공정보(1101) 등록
- ◆ **상환방식**: 원금분할상환
- ◆ **채무감면**: 이자감면 및 원금감면*
*미상각채권 0~30%, 상각채권 0~70% 범위 내 원금감면(단,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%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8년(차상위계층 10년)
- ◆ **상환유예**: 최장 3년(연2%)

특례: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

- ◆ 연체정보 등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(미공유)
- ◆ 채무조정(감면기준 상동) + 재창업자금 지원 (최대 30억원)

새출발기금

신속채무조정

<10000원 · 10000원>

- ◆ 단기연체정보 해제, 연체정보 등 미등록
- ◆ **상환방식**: 원리금분할상환
- ◆ **적용이율**: 약정이율(상한 연9%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10년(부동산담보 20년)
- ◆ **상환유예**: 최장 3년(연2%)

금융취약계층

- ◆ **대상**: 개인사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자
- ◆ **적용이율**: 연3.9~4.7%(상환기간에 따라 상이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20년

새출발기금

사전채무조정

<10000원 · 10000원>

- ◆ 단기연체정보 해제, 연체정보 등 미등록
- ◆ **상환방식**: 원리금분할상환
- ◆ **적용이율**: 연3.9~4.7%(상환기간에 따라 상이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10년(부동산담보 20년)
- ◆ **상환유예**: 최장 3년(연2%)

금융취약계층

- ◆ **대상**: 개인사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자
- ◆ **적용이율**: 연3.9~4.7% (상환기간에 따라 상이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20년

새출발기금

일반

<10000원 · 10000원>

- ◆ 연체정보 등 해제 후 공공정보(1802) 등록
- ◆ 새출발기금(주) 비협약채무 + 담보대출 지원
- ◆ **상환방식**: 채무성격에 따라 상이
- ◆ **적용이율**: 연3.9~4.7%(상환기간에 따라 상이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10년(부동산담보 20년)
- ◆ **상환유예**: 최장 3년(연2%)

금융취약계층

- ◆ **대상**: 개인사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자, 소액채무·저소득자
- ◆ **적용이율**: 연3.9~4.7%(상환기간에 따라 상이)
- ◆ **상환기간**: 최장 20년

